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.

발 의 자 : 박은정 · 김준형 · 서왕진
진선미 · 이기현 · 백승아
문정복 · 강경숙 · 김현정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·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,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
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, 성폭력 등 반복적·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·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(안 제29조).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전단 중 “제2항제6호”를 “제2항제2호 및 제2항제6호”로, “가정폭력피해자등”을 “가정폭력피해자등 및 피해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(중전의 제11항) 중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·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·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(이하 이 조에서 “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.

1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

2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성폭력행위자

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
행위자

⑧ 열람 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의 제한신청이
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제한대상자”라 한다)에게
가정폭력피해자등 및 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
거나 등·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
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 ~ ⑥ (생략) ⑦ 열람 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제한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	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·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·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(이하 이 조에서 “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. 1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2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<신 설>

⑧ 열람 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⑨·⑩ (생략)

제2호에 따른 성폭력행위자

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행위자

⑧ 열람 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제한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등 및 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⑨ -----
-----제2항제2호 및 제2항제6호-----가정폭력피해자등 및 피해자등-----

-----.

-----.

⑩·⑪ (현행 제9항 및 제10항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,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 방법,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과 같음) ⑫ -----제1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